

서울특별시 강서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2020년 4월 24일
미래·복지위원회

1. 심 사 경 과

가. 제출일자: 2020년 4월 14일

나. 제출자: 김현희 의원 외 6명

다. 회부일자: 2020년 4월 20일

라. 상정일자: 제27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

미래·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 상정·의결(2020. 4. 24.)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: 김현희 의원)

가. 제안이유

구민의 건강증진과 쾌적한 주거여건 조성을 위한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 활동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- 1)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을 통한 구민의 건강증진과 쾌적한 주거여건 조성이라는 조례의 목적 규정함(안 제1조)
- 2) 조례에서 사용되는 악취, 생활악취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(안 제2조)

- 3) 구청장, 사업자, 구민의 책무를 규정함(안 제3조~제5조)
- 4)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을 위한 실태조사 시행을 규정함(안 제6조)
- 5)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 관련 지원사업에 대하여 규정함(안 제7조)
- 6) 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규정함(안 제8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악취방지법」, 「지방자치법」, 「지방재정법」

나. 합 의: 녹색환경과

다. 기 타: 입법예고(2020. 4. 14. ~ 4. 19.) 결과: 의견없음

4. 전문위원 검토의견

(전문위원: 정우숙)

- 본 조례안은 생활악취 발생을 방지하여 악취로 인한 불쾌감을 줄이고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제정되는 조례안으로,
- 이번 조례안 제정은 제3조에서 제5조에 거쳐 구청장·사업자·구민의 책무를 규정함으로 생활악취 저감을 위한 협력을 강조하였고, 제7조에서 생활악취 발생 원인이 되는 시설 등에 대해 예산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,
-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 활동지원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어 구민의 건강증진과 함께 주거여건 개선이 기대됩니다.

5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6. 토론요지: 생략

7. 심사결과: 원안가결

붙임 관계법령 1부.

□ 악취방지법

제3조(국가·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) ① 국가는 악취방지에 관한 종합시책을 수립·시행하고,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악취방지시책에 대한 재정적·기술적 지원을 하며, 악취가 생활환경 및 사람의 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조사·연구, 악취방지에 관한 기술 개발 및 보급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자연적·사회적 특성을 고려하여 악취방지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하며, 악취방지를 위하여 노력하는 주민에게 재정적·기술적 지원을 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.

③ 모든 국민은 사업활동을 하거나 음식물의 조리, 동물의 사육, 식물의 재배 등 일상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의 생활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악취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,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악취방지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
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악취방지에 관한 종합시책을 10년마다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□ 지방자치법

제66조(의안의 발의) ① 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.

② 위원회는 그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의 의안은 그 안을 갖추어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④ 제1항에 따라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때에는 발의의원과 찬성위원을 구분하되, 해당 조례안의 제명의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. 다만, 발의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의원 1명을 명시하여야 한다.

⑤ 의원이 발의한 제정조례안 또는 전부개정조례안 중 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을 공포 또는 홍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례안의 부제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.

□ 지방자치법

제23조(보조금의 교부) ① 국가는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.

②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(이하 "시·도"라 한다)는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시·군 및 자치구의 재정 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·군 및 자치구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할 때에는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하는 경우와 국가 정책상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재원 부담 지시를 할 수 없다.